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스토킹처벌법 시행령)



[시행 2021. 10. 21.] [대통령령 제31866호, 2021. 7. 6., 제정]

법무부 (형사법제과) 02-2110-3712

- 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) 법무부장관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- 제3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무(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)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,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- 1. 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사무
 - 3.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
 - 4.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에 관한 사무
 - 5.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
 - 6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변경 등 청구에 관한 사무
 - 7. 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무
 -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사무(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)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- ③ 보호관찰소의 장,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(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)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 <제31866호,2021. 7. 6.>

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